

의안번호	2214254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6. 4. 17.
추계번호	25B6176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2억 5,400만원(연평균 2억 5,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150	—	—	—	—	150	30
실태조사 (안 제9조)	368	—	368	—	368	1,104	220
합계	518	0	368	0	368	1,254	250

주: 1.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방법·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 등)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생활협동조합의 지원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하에 지역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생활협동조합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4.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6.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생활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발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생활협동조합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3조(생활협동조합제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15조(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설치 등)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생산자협회)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2	안 제17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3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8조(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5	안 제9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6	안 제10조(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등의 전문적 자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약생산·매입 지원,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용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 시점에서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법·내용 등 구체적인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수산물을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친환경농업 기반 구축</td><td>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산정기준) 지방정부 신청 수요 반영</td><td>5,642</td></tr><tr><td>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td><td>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간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비· 시설비 등 지원</td><td>1,150</td></tr><tr><td>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td><td>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용자 지원 친환 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등 기여</td><td>18,500</td></tr><tr><td>유기농식품유통 활성화</td><td>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온 라인 마케팅 역량 제고 및 판 로지원 등</td><td>143</td></tr></table>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산정기준) 지방정부 신청 수요 반영	5,642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간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비· 시설비 등 지원	1,150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용자 지원 친환 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등 기여	18,500	유기농식품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온 라인 마케팅 역량 제고 및 판 로지원 등	143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산정기준) 지방정부 신청 수요 반영	5,642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간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비· 시설비 등 지원	1,150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용자 지원 친환 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등 기여	18,500																
유기농식품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온 라인 마케팅 역량 제고 및 판 로지원 등	1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7	안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협동조합 인증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8	안 제13조(생활 협동조합제품인 증)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생활협동조합제품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14조(생활 협동조합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활협동조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축 대상 정보망 규모 및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5조(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설치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기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6조(생산자협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생산자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2	안 제17조(포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포상 기준·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3	안 제1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도	금액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2	160
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기초조사 및 기준·방안 등 마련	2024	140
평균		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3]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150	-	-	-	-	150	3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6억 2,500만원(연평균 3억 2,500만원)으로 추계
 - － 제정안에 따라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 관련 사례

(단위: 백만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내용	2026년 예산
유통실태조사	유통경로, 유통비용 등 조사·분석을 통해 유통개선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400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실태조사	유통경로 및 비용 등 조사·분석을 통해 농업인, 유통기업, 연구자 등 정책고객 의사결정 및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유통·소비정보 기반 구축	336
평균		3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5]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368	—	368	—	368	1,104	22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